



PwC 베트남 뉴스레터

관세법 위반에 대한 신규 처벌 규정

2026년 6월





개요

5월 15일, 정부는 세관 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69/2026호를 공포했으며, 이는 기존 시행령 제128/2020호와 제102/2021호를 대체합니다. 해당 신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



01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에 대한 제재 미부과

시행령 제169호는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정확한 세관 신고에 대한 제재를 폐지함으로써, 기술적 또는 행정적 오류에 대한 제재 위험을 줄입니다.

02

처벌 대상이 되는 세관 위반 행위 범위 확대

본 시행령은 다음 사항에 대해 행정처벌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관세 최종 정산보고서 감사 또는 통관 후 심사 결정이 발행되기 전에 실제 BOM을 연간 기준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및
 - AEO 기업에 적용되는 분기별 통지 및 보고 의무 위반, 임가공 또는 위탁제조 시설의 등록 정보 변경 미통지 등 시행령 제167/2025호에 따른 통지 및 보고 의무와 관련된 위반
-

03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사유 확대

해당 시행령은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을 확대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이 법정기한 내에 자진하여 추가 신고를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



04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벌 부과 허용

시행령 제169호는 위반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처벌 결정의 전자적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관 절차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종이 기반 문서 처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5

공안 당국의 제재 권한 확대

신규 규정에 따라 인민공안(People's Public Security) 은 세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2억 VND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물품의 몰수 및 시정조치의 집행 권한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guyen Huong Giang
Partner
n.huong.giang@pwc.com



우정균 – 호치민 사무실
Directo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jungkyun.woo@pwc.com



Nguyen Thi Thu Ha
Director
nguyen.thu.ha@pwc.com



위규영 – 하노이 사무실
Manager
+84 (24) 3946 2246 Ext. 1011
wee.kyue.young@pwc.com



www.pwc.com/vn